

서울 행정 법 원

행정 13 부

[2017구합83096]

사 건 명 : 보험급여결정취소 청구의 소

원 고 : 원고1

경기도 광명시 이하 생략

소송대리인 변호사1

담당변호사 변호사1

피 고 : 수협중앙회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B

담당변호사 변호사2

변론 종결 : 2018. 12. 6.

판결 선고 : 2019. 2. 19.

주 문

1. 피고가 2017. 9. 29.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결정을 취소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

청구취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망 ○○○(이하 생략생, 이하 '망인' 이라 한다)의 아내이고,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(이하 '어선원재해보험법' 이라 한다) 제9조에 의하여 ○○○○○장관으로부터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인이다.

나. 망인은 어선원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○○호(이하 '이 사건 선박' 이라 한다)의 선주이자 선장인 ○○○(이하 '선장' 이라고만 한다)과 선원근로계약을 맺고 이 사건 선박에서 화장(조리사)으로 근무한 사람이다.

다. 망인은 2016. 10. 22. 22:00경 전남 ○○군 ○○도 서방 10마일 해상에서 조업 대기중인 이 사건 선박의 선원 침실에서 동료 선원 3명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사망하였다.

라. 원고는 망인이 직무상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, 피고는 2017. 9. 29. 망인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,000일분에 해당하는 111,245,000원을 유족급여로 결정하였다(이하 위 처분중 어선재해보험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,300일분으로 산정되는 직무상 사망을 원인으로 한 유족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부분을 '이 사건 선박' 이라 한다)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, 10호증, 을 제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1) 망인은 사망하기 3일 전부터 계속 복통을 호소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선박의 선주인 선장은 인근의 항구에 기항하여 의료검사 및 치료를 받도록

하여 선원의 생명·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다. 그런데, 선장은 망인의 계속된 통증 호소에도 이를 무시하고 3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였고, 이로 인하여 망인이 신속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여 섶암증, 화농성 염증이 악화되고 장관 파열 및 복막염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.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직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

2) 섶암증으로 장관 파열이 된 경우 적기에 치료하면 복막염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고, 복막염으로 진행하더라도 대부분 3일 이내에 수술한다면 복막염의 완치가 가능하다. 한편 이 사건 선박은 30분이면 ○○도 소재 병원에, 3시간이면 ○○ 소재 병원에 망인을 후송할 수 있는 위치에서 조업 활동을 하고 있었다. 이와 같이 적기에 치료를 받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장소에 있었던 망인이 해상 조업이라는 직무 때문에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위 질병의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, 비록 위 질병 자체가 직무상 질병이 아니라 하더라도, 망인의 사망은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,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

나. 인정사실

1) 망인의 선원 경력 및 이 사건 선박에서의 업무에 관한 사항

가) 망인은 선원생활을 25년 정도 하였고 이 사건 선박에는 2016. 8. 15.경부터 승선하였다.

나) 선장과 망인을 포함한 선원 4명이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2016. 10. 7. 전남 ○○군 ○○면 ○○항에서 출항하였고, 2016. 10. 12.까지 5일 가량 전남 ○○군 ○○면 ○○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였다.

다) 망인은 이 사건 선박에서 선원들에게 식사를 준비하여 제공하는 화장(조리사)으로 근무하였다.